

제2018-4호

## 제23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,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
1. 일 시: 2018년 4월 23일(월요일) 오전 10시
2. 장 소: 성동구의회 본회의장

2018년 4월 16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김달호